

의안 번호	216
----------	-----

제출년월일: 2001..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균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1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2. 주 요 골 자

200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변경안 심의대상은 토지매입 2건, 23필지, 52,304㎡, 311,554천원과 건물 2동, 109㎡, 26,263 천원을 매입하고자 하며,

2001년도 취득재산으로 승인받은 공설테니스장 부지매입은 위치 변경에 따라 제외하고자 합니다.

1) 김치박물관 부지매입 (기획실)

「한국김치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비 및 민간자본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사업을 축소하여 「김치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2001년 4월 문화관광부에 국비보조를 신청하였으며, 2001.5.17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담당 서기관의 현지 실태조사시 국고보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박물관 기능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식품 예술 창작품으로서의 『김치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부지인 상진부리 635 번지 외 15필지, 43,316 m², 272,187천원을 매입 하고자 합니다.

2) 수항리사지 매입 (문화관광과)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49호인 수항리사지(수다사지)는 월정사 건축보다 빠른 7세기 중엽 자장에 의하여 건립 되었다는 사찰로서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사유지로서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매입후 보존이 시급한 실정에서,

도비 50백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50백만원을 포함 총 10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33,812m²중 수항리 143-7번지 외6필지 8,988 m²를 (공시지가 39,367천원) 우선 매입하고자 합니다.

4) 공설테니스장부지 취득 제외(문화관광과)

2001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공설테니스장 부지로 종합운동장 인접인 종부리 산69번지 외3필지 6,005m², 2,770천원을 승인 받았으나, 토지매입 무산과 주민들의 장소 변경 요청에 따라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어 매입 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합니다.

3. 관계법규 및 지침(발췌)

-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총 괄 표 (7-1)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², 천원)

구 분		합 계			당 초			변경 계획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합계	토지	10	284,270	742,416	9	237,971	433,632	2 △1	52,304 △ 6,005	311,554 △ 2,770
		건물	9	4,165	4,226,823	9	4,056	4,200,560	0	109	26,263
		기타									
	매입	토지	8	258,598	468,717	7	212,299	159,933	2 △1	52,304 △ 6,005	311,554 △ 2,770
		건물	0	109	26,263				0	109	26,263
		기타									
	교환	토지	2	25,672	273,699	2	25,672	273,699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9	4,056	4,200,560	9	4,056	4,200,560				
	기타										
처 분	합계	토지	2	27,242	277,088	2	27,242	277,088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2	27,242	277,088	2	27,242	277,088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1년도 취득재산 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², 천원)

번호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지 목	소재지	수량				
합계	2 건	토지 2 건, 23필지 건물 0 건, 2 동	52,304 109	311,554 26,263			
1	소 계	토지 1 건, 16 필지 건물 1 건, 2 동	43,316 109	272,187 26,263	하반기	김치박물관 부지	
-1	대	상진부 635	793	8,327	"	"	이문수
-2	전	상진부 636	982	7,424	"	"	임정래
-3	전	상진부 637	6,793	52,985	"	"	강달식
-4	대	상진부 638	387	3,584	"	"	강달식
-5	전	상진부 639	2,152	18,292	"	"	강달식
-6	전	상진부 640	440	3,401	"	"	최중규
-7	전	상진부 641	6,169	44,170	"	"	최중규
-8	전	상진부 642	1,481	10,500	"	"	주성은
-9	전	상진부 642-1	5,332	37,804	"	"	임정래
-10	전	상진부 643	2,205	15,788	"	"	최중규
-11	전	상진부 644	1,829	13,096	"	"	양재석
-12	전	상진부 646	3,000	24,450	"	"	전순녀
-13	전	상진부 651-1	3,405	26,525	"	"	김진각
-14	입	상진부 산363	2,497	1,596	"	"	산림청
-15	입	상진부 산364-1	3,798	2,769	"	"	주성은
-16	입	상진부 산364-2	2,053	1,476	"	"	주성은

2001년도 취득재산 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지 목	소 재 지	수량				
-16	시,블럭	상진부 635	59	17,754	하반기	김치박물관 편입	이문수
-17	시,블럭	상진부 638	50	8,509	"	"	강달식
2	소 계	7 필지	8,988	39,367	하반기	수항리사지 매입	
-1	전	수항리 143-7	1,322	5,790	"	"	이경순
-2	전	수항리 143-9	1,322	5,790	"	"	임찬규
-3	전	수항리 143-18	1,652	7,236	"	"	조기석
-4	전	수항리 143-19	1,652	7,236	"	"	김신자
-5	전	수항리 143-20	702	3,075	"	"	임찬규
-6	전	수항리 143-21	1,053	4,612	"	"	임찬규
-7	전	수항리 143-24	1,285	5,628	"	"	임찬규

2001년도 취득제의 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군의회 의결대상)

(단위: m²,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가액	제외 사유	소유자
	지 목	소 재 지	수량			
합계		4 필지	6,005	2,770	공설테니스장 위치변경	
1-1	임야	종부리 산69	800	345	“	이장현
1-2	임야	종부리 산70-2	1,100	543	“	김창진
1-3	임야	종부리 산71-1	2,405	1,189	“	김기택
1-4	임야	종부리 산71-2	1,700	693	“	김기택

관 계 법 규 (발췌)

지 방 재 정 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2001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의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